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2
----------	-----

2025. 3.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3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마. 추진사업(안 제5조)

바.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안 제6조)

사. 예산지원(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자.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부칙)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성별·신분·종교·직업을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할 역사임
-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6.5.20.)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 또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히 선양 행사 개최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고 기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도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선양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학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을 따르고 있고,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해 정의한 관련 법령은 없으나 조례안의 정의는 이념적 편향 등이 반영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안 제3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의 사업 추진, 안 제6조의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됨
- 안 제4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각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5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에서의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념적 편향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교원 연수 등이 필요하고 단순 교육 외 각종 행사 및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6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충북 지역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독립운동사 교육 및 선양 행사를 추진한다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뜻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효율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591명*이고 도내에는 139개의 독립운동사적지**가 있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다면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현황(2025.3월 기준)

**충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연구보고서(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고찰, 2018)

-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부개정이 아닌 제정 형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기존 조례의 폐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 절차상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다만, 역사 관련 교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편향이 반영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독립운동사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부분에 유념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나라 사랑 정신 증진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 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선양 행사”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사업
3. 독립운동사 교육 예산 확보 및 운용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사 관련 동아리 운영
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항의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

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에 따른 사업 추진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사업)
- 안 제6조(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 안 제7조(예산지원)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5년부터 335,65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충청권공동역사교육 (독립기념관 연계)	28,250	28,250	28,250	28,250	28,250	141,250
독립운동사 교육 (사적지 순례 전시 역사퀴즈 대회 /지방보조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 워크숍	2,900	2,900	2,900	2,900	2,900	14,500
독립운동사 교육 동아리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운영	236,500	236,500	236,500	236,500	236,500	1,182,500
합계	335,650	335,650	335,650	335,650	335,650	1,678,250

○ 충청권 공동역사교육 사업

- 28,250천원×1회
- 충청권 4개 교육청과 독립기념관 공동역사교육 사업
-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독립운동사 교육 중심)

※ (산출기초)

- 3월~12월
- (용품) 100,000원×1회=100,000원
- (차량임차료) 750,000원×2대×2회=3,000,000원
- (급량비) 3,000원×50명×1회=150,000원
- (분담금) 25,000,000원×1회=25,000,000원

○ 지방보조금 사업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 25,000천원×2기관(단체)
- 독립운동사교육 1기관(단체), 찾아가는 단재역사퀴즈 교실 1기관(단체)

※ (산출기초) 2기관(단체) 50,000천원

- 3월~12월
- 25,000,000원×2회=50,000,000원

○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 워크숍

- 2,900천원×1회
- 전문가 특강 및 실천 사례 나눔을 통한 독립운동교육주간 운영 역량 강화

※ (산출기초)

- (인쇄물) 7,000원×200부×1회=1,400,000원
- (용품) 100,000원×2회=200,000원
- (특별강사 2급) 450,000원×2명=900,000원
- (협의회) 10,000원×20명×2회=400,000원

○ 독립운동사 교육 동아리 운영

- 1,500천원×12교(공모사업)

※ (산출기초) 12교 18,000천원

- 3월~12월
- 1,500,000원×12교=18,000,000원

-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운영(학교 특색 독립운동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00천원×473교(초 256교·중 132교·고 85교)

※ (산출기초) 473교 236,500천원

- 연 1회

- (학교회계전출금) 500천원×473교=236,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335,650	335,650	335,650	335,650	335,650	1,678,250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335,650	335,650	335,650	335,650	335,650	1,678,250
재원 조달		335,650	335,650	335,650	335,650	335,650	1,678,25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35,650	335,650	335,650	335,650	335,650	1,678,25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